

공 시 송 달

- 급수전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사하구 관내 장기 정수처분 수용가 중 소유자 행방불명으로 등기 송달이 불가능한 급수전을 직권폐전(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(급수중지와 폐전))하고자 지방세 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,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(의견청취)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○ 공고기간: 2021. 9. 16 ~ 9. 30(14일간)

○ 급수전 직권폐전예고 대상

연번	수용가 내역			체납내역		비 고
	급수전 소재지	수용가명 (소유자)	고객번호	기간 (횟수)	금액 (원)	
1	부산 사하구 대티로 41번길 31 (괴정2동 194-11)	신 * 길 (신*길)	210876-100	2021.1월~ 2021.7월 (4)	1,107,780	소유자 행방불명 현거주지 파악불가

2021. 9. 16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

